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
2. 건 명: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: 붙임참조

4. 검 토 의 견 : 붙임참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5월 29일

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8년 5월 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# 1. 제안이유

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다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"행정자치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함(안 제12조).
- 나. 기타 다른 조례에 인용한「정부조직법」의 관련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일괄·개정함.

### 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이 2002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,

#### 주요 내용은

- 제12조 중 "행정자치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하고,
- 부칙에 「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3항의 "행정자치부 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하고,

「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」제21조 및 제34조 중 "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장관"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,

이는, 본 조례와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정부조직법」의 관련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사료됨.